

# EU의 입법절차

이재훈(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 부연구위원)

(법률안제출) 유럽연합의 법적행위 정립과 관련하여, 유럽집행위원회는 입법적 행위(Gesetzgebungsakt) 의안 제출권을 독점(Initiativmonopol)함

-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 제17조 제2항 제1문: “유럽연합에 관한 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, 유럽연합의 입법적 행위(Gesetzgebungsakt)는 오직 유럽집행위원회의 제안에 의해서만 채택될 수 있다.”

(심의 및 의결) 유럽연합의 입법절차는 일반입법절차와 특별입법절차로 구분됨

- 일반입법절차: 일반입법절차의 기본적 틀은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입법적 행위(안)에 대해서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구조임
- 일반입법절차는 ① 입법적 행위(안) 제출, ② 1독회, ③ 2독회, ④ 조정, ⑤ 3독회로 구분됨

① 입법적 행위(안) 제출: 유럽집행위원회는 입법적 행위 발안과 관련된 발안 독점권을 갖고 있으며, 따라서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입법적 행위(안)을 제출함으로써 일반입법절차가 개시됨

## ② 1독회

- 제출된 입법적 행위(안)에 대해서 유럽의회가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대해 이사회가 동의를 하면 당해 입법적 행위는 채택됨
- 이사회가 유럽의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이사회는 이사회 측의 의견을 채택한 후 그 이유와 함께 이를 유럽의회에 통지하여 2독회 진입

## ③ 2독회

- 이사회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유럽의회는 다수결에 의해 이사회 의견에 동의하면 입법적 행위 채택 또는 의원의 다수결을 통한 이사회 의견 거부 및 입법적 행위(안) 폐기 또는 의원의 다수결을 통한 개정(안) 제시
- 개정(안) 제시의 경우 이사회는 3개월 내로 가중다수결에 의한 개정(안) 채택이 가능한 반면, 개정(안) 거부 또는 3개월 도과를 통해 조정 단계 진입 시도 가능

## ④ 조정

-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파견한 구성원으로 조직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장 6주간 공동(안) 도출 시도, 이때 유럽집행위원회도 참여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의견합의를 위해 협업
- 공동(안) 도출 실패 시 최종 폐기
-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유럽의회 측 구성원의 다수결 및 이사회 측 구성원의 가중다수결을 통해 공동(안) 성립 시 3독회 돌입

⑤ 3독회

- 6주내에 유럽의회의 다수결 및 이사회의 가중다수결을 통해 공동(안)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입법적 행위 채택
- 6주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최종 폐기

○ 특별입법절차: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상정하는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특별 입법절차가 운용될 수 있음

- 특별입법절차의 경우, 일반입법절차에서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의 공동결정을 통해 입법적 행위가 채택되는 것과는 달리, 이사회의 참여 하에 유럽의회가 입법적 행위를 채택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절차가 진행됨

(공포) 관보에 출판하는 방식으로 공포됨

- 법률에 효력발생일이 지정된 경우 그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함
- 법률에 효력발생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관보 공간 후 20일 후 효력이 발생함
- 일반입법절차를 통해 채택된 법률은 유럽의회 의장 및 이사회 의장이 서명함
- 특별입법절차의 경우 규정에 따라 유럽의회의 의장 또는 이사회 의장이 서명함



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 
<EU의 입법절차와 현황>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.